

# 서울시설공단 개방형직위(법무팀장) 공개모집

“시민중심의 도시기반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공기업” 서울시설공단에서 개방형 직위(법무팀장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2018년 5월 2일

서울시설공단 이사장

## 1. 임용직위

임용예정직위	임용가능직급	주요 업무내용	비고
법무팀장	서울시설공단 개방형직위 2호	· 공단 법무업무 총괄 · 주요 소송에 대한 소송보조 지원 및 관리 · 법률 자문 및 법률적 리스크 관리 · 계약서 및 협약서 심사 · 제규정 제정 및 개폐 관련 총괄 · 공단 업무와 관련된 법령 등의 조사 및 연구	세무 수행예정직무 <붙임 1> 참고

### ※ 지원시 참고사항

☞ 법무팀장 : 경영전략본부 기획조정실 산하 편제 / **임용 예정일 : 2018. 7월 중**

2. 임용(입기)기간 : 2년 (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1년 단위 연장 가능)

3. 응시자격요건 :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**결격사유(붙임 2)에 해당하지 않으며, 아래 자격(경력)기준을 충족하는 자**

**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변호사 등록 후,  
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**

## 4. 시험일시 및 장소

- 서류전형 : 2018. 5. 17.(목) 예정 ※ 합격자 발표 : 2018. 5. 21.(월) 예정
- 면접전형 : 2018. 5. 24.(목) 예정 / 서울시설공단 본사(성동구 마장동)
- 최종합격자 발표 : 2018. 5. 31.(목) 예정

5. 시험방법 : 형식요건심사 합격자(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)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함

- 서류심사(1차)
  - 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수행계획을 심사하며 응시자격 요건 충족자 전원 선발을 원칙으로 함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경우, 심사(평가)결과 고득점 순으로 7배수를 선발함.
- 면접시험(2차)
  -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업무능력 및 직무적합성을 심사함

## 6.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

- 접수기간 : 2018. 5. 2.(수) ~ 5. 14.(월), 18:00 까지
- 지원서 양식 : 본 채용공고의 첨부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recruit@sisul.or.kr) 만 시행
  - ※ 이메일 제목은 “[개방형 직위(법무팀장)]성명”으로 명기하여주시기 바라며, 일부 메일 계정의 경우 수신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, 수신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(02-2290-7158)

## 7. 제출서류 : 아래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(PDF)로 제출

- 지원서, 경력집계표, 자기소개서(A4용지 2매 이내)
- 직무수행계획서(A4용지 10매 이내, 요약서 2매 이내 첨부)
  - ※ 작성내용 및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변호사 등록증서(사본) 또는 변호사등록증명원, 경력증명서, 자격증 및 기타 직무 관련 활동 증빙서류 등
  - ※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지원서에 첨부한 증빙서류 원본을 다시 요구하므로 원본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라며, 경력증명서는 발급기관(업체) 직인 및 발급 담당자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.
  - ※ 다만, 폐업 등으로 인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, 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” 또는 “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” 또는 “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”제출 시 경력으로 인정함

- 기타 보유 자격증 등 증빙서류(해당자만 제출)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(출력 후, 동의여부 체크 및 서명)

## 8. 보수수준 : (세전 연봉) 하한 68백만원 ~ 상한 76백만원

- 공단 일반직 3급(23호 상당)의 임금수준에 따른 기본연봉,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연봉, 복지포인트 및 제복리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임.

## 9. 기타사항

-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.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, 채용서류반환의 청구기간(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)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게 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거나,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, 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설공단 인사처 인사팀(☎02-2290-7158)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[붙임 1] 직무설명자료

<p><b>공단 주요사업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공공시설물 유지·관리) 지하도상가, 어린이대공원, 월드컵경기장, 고척돔 경기장, 자동차전용도로 등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의 유지·관리</li> <li>○ (공공서비스 제공) 장애인콜택시, 상수도검침·교체, 공공자전거 대여, 서울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감독 수행 등 대시민 서비스 제공</li> </ul>
<p><b>핵심직무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법률자문 검토) 법률자문 질의의 사전 검토 및 회신내용 검토, 전사적 리스크 관련 내부 법률자문 의견서 작성 등</li> <li>○ (내부규정 심사) 내부 제·개정안에 대한 규정체계 및 타 법령과의 배치 여부 검토, 개선의견 제시 및 심사 등</li> <li>○ (계약서 및 협약서 심사) 각종 사용·수익허가, 대부계약 등의 수입계약, 공사·물품·용역의 지출계약, 외부기관과의 협약서의 심사 및 검토</li> <li>○ (소송 지원 및 관리)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법리 구성, 소송 대응 방안 구축, 소송 현황 관리 등</li> <li>○ (지식재산권 관리)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유지·관리 등에 관한 사항 검토, 개선의견 제시 및 임직원 직무발명 등에 대한 출원 지원 등</li> <li>○ (기타사항) 공단 사업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서 작성 및 연구</li> </ul>
<p><b>직무수행내용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법무) 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고 명확한 법률 의견 제공, 공단의 제·규정과 각종 계약서 등에 대한 심사 및 개정 지원, 기타 현안사항 법률검토 및 보고 등</li> </ul>
<p><b>필요지식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법무)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, 노동관계법령, 공공계약법, 민사법 등</li> </ul>
<p><b>필요기술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법무) 법령 해석 및 검토 능력, 법률정보 검색 및 활용 능력, 보고서 작성 능력, 상담 및 보고 능력, 행정처리 능력 등</li> </ul>
<p><b>직무수행태도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문성, 분석력, 논리적 사고, 의사소통, 협조성</li> </ul>

## [붙임 2] 인사규정 제12조(결격사유)

제12조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6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